

## 완산구 공원수목관리원(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완산구청에서는 2025년 완산구 공원수목관리원(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4. 15.

완산구청장

### □ 채용추진 개요

1. 채용분야 : 완산구 공원 수목관리원(수시)

2. 모집인원 : 4명

3. 근무기간 : 2025년 5월 8일 ~ 10월 15일

※ 기상여건 및 시행기관 사정에 따라 사역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4. 근무지 : 완산구 관내 공원 ※ 추후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음.

5. 임금 등 근로조건

가. 근무시간 : 07:30 ~ 16:30 (8시간/일)

- 단, 12:00 ~ 13:00 휴게시간으로 함

- 기상 상태와 작업 여건 및 예산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재난 발생 시 토, 일 등 추가근무 가능자

나. 인부임의 지급 : 87,680원 / 8시간(부대경비 없음)

※ 근무시간 변동될 경우 2025년 생활임금 기준에 따름(10,960원/1시간)

다. 4대보험 의무가입이며,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함.

라. 보험금 정산 시 발생하는 보험료는 환수할 수 있음.

마. 유급휴일 : 근로자의 날,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법정공휴일)

### 6. 종사업무

가. 공원 정비 및 장비의 유지관리 (동력 전정기·기계톱 및 일반작업 도구 사용)

나. 공원 수목 및 녹지유지관리(기계톱, 예초기 및 일반작업 도구 사용)

다. 공원 내 수형 불량목, 고사목 제거 등 벌채 및 가지치기 작업

- 라. 수목 병해충 방제,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 보수 작업
- 마. 공원 화장실 청소 및 주변 환경정비 작업
- 바. 벤치, 파고라, 울타리, 화장실, 운동기구, 데크 등 각종 공원 시설물 보수 작업
- 사. 등산로 주변 배수로 준설작업, 산물처리 및 낙엽 수거 작업
- 아. 기타 공원 유지관리 업무 지원 등 관계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제반 업무 등

□ 자격요건

1. 응시자격

- 가. 공고 전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주시로 되어있는 자 중 만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
- 나. 전주시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관리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2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1. 경력, 학력 및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채용된 사람
12.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다. 전정기, 예초기, 기계톱 등 녹지관련 장비 사용이 가능한 자
- 라. 공원 각종 시설물 관리가 능숙한 자
- 마. 수목, 초화류 등 조경 관리 업무가 능숙한 자
- 바. 업무 처리를 위해 화물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자

2. 응시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가.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 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무단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 나.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 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정신적, 신체적 이상이 있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자
- 마. **전주시 산하 기간제 근로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채용예정일(2025. 5. 8.)로부터 6개월 이상의 근무 공백기간을 만족해야 지원 가능**  
(단, 55세 이상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계약기간이 8개월 이내로 짧은 경우 공백기간 기준을 6개월이 아닌 1개월 이상으로 적용)
- 바. 동일 기간에 시행되는 공원·녹지 관련 채용원서접수 중복 불가(덕진구 사업 포함)

3. 선발기준 : 신청인원이 선발계획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음 항목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발

- 가. 수목전지 및 벌목작업 등 녹지관련 현장업무 유경험자
- 나. 녹지관련 장비(전정기, 예초기, 기계톱 등) 사용이 능숙한 자
- 다. 수목 등 조경관리 및 전주시 공원 관리 업무 등 지식, 능력이 풍부한 자
- 라. 산림·녹지·조경 관련 자격 및 교육 이수(수료)자
- 마. 자동차, 이륜차 등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운전면허 1종)을 구비한 자
- 바. 실질적 취업취약계층

4. 우대사항

○ 만 55세 이상 고령자

「전주시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2(고령자 채용 등)의 규정에 의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고령자를 우대

- 다음 취업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 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 [별표8]에 의하여 우대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 의용군인의 자녀

※ 대통령령 제46조의 2(취업지원 상이등급) ① 법 제29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 취업취약계층 우대

취업취약계층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단 청소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이 있는 장애(외상, 청각, 시각, 간질, 정신질환 등)가 없어야 함)
2. 취업보호대상자(아래 각 항목에 해당되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보호대상자로 확인받아야 함.)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 등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다자녀가정 지원자 우대 :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3조(시의 책무) 및 제6조(출산장려지원사업)
-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2명 이상의 자녀(단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를 양육하는 부모
- ※ 전주시 다자녀 우대증 발급 대상자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2조(정의) 3.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에 따라 두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다자녀 가정 우대증 발급대상) ① 다자녀 가정 우대증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인하여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 발급한다. 다만, 마지막 자녀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 □ 채용방법 및 서류제출

### 1.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접수기간 : 2025. 04. 15. (화) 16:00 ~ 04. 22. (화) 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나. 교부 및 접수처 : 완산구청 6층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빠짐없이 기재하여 접수처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전자우편([heejin614@korea.kr](mailto:heejin614@korea.kr))제출(팩스 불가)

마. 시험일정

구분		일정	장소 / 공고	비고
1차	서류전형 (원서접수)	2025. 04. 15. (화) 16:00 ~ 2025. 04. 22. (화) 18:00	완산구청 6층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	제출 서류로 적격여부 확인
2차	필기평가	<b>2025. 04. 24. (목)</b> <b>(변동될 수 있음)</b>	개별통보	
	체력검정			
	실기평가			장비사용
	면접심사			
최종발표		2025. 4월 중	개별통보	
근무개시		2025년 5월 8일	완산구 관내 공원	

※ 실기평가 점수가 실기 만점의 40% 미달인 경우 채용대상 제외

※ 2차 시험 일정은 지원자 수, 기상여건 및 시행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접수자에게 유선통보.

※ 응시원서는 공고문 붙임을 출력하여 작성.

※ 채용신체 검사서는 최종선발 통보 후 준비

(병의원 및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청각, 시각)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선발 및 사역 취소 / 채용신체검사서 미제출시 합격 및 사역 취소)

### 2.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붙임1 참고] ※ 신분증 사본(필요시)

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2 참고]

다.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지 확인 및 세대주, 부양가족 확인용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라. 구직등록필증(고용복지플러스센터) 1부.

- 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신청) 1부
- 바. 관련분야 자격증, 교육 이수증 1부
- 사. 취업취약계층은 각 범주별 증빙자료 첨부(해당자에 한함) [붙임3 참고]
- 아. 국가유공자 증빙 서류(=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보훈지청 신청)
- 자. 운전면허등록증 1부

## ※ 유의사항

1.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사업장에서의 폭행 및 욕설, 폭언, 근무지 이탈, 근무 태만, 음주, 도박, 정당한 업무명령 거부, 업무방해 및 사업장 질서위반 행위 등에 대하여는 경고장 발부, 징계(일정기간 출역금지 등) 또는 해고 등 제재 조치를 취합니다.
3.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내 응시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 확인 후 반환 가능합니다.  
※ 기간엄수
4.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5.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모집에 관한 문의 사항은 완산구청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220-5315)으로 문의바랍니다.
7. 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5조(계약해지)에 의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5조(계약해지) 사유 >

-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 다.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결정이 있는 경우
- 라.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 마. 사업 종료 또는 중단, 예산 삭감, 그 밖의 사유로 더 이상 해당사업의 존속이 어려운 경우
- 바. 연속 30일을 초과하여 병가를 사용할 경우
- 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아.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붙임 제1호】

# 응시원서

종사업무	2025년 완산구 공원 수목관리원(수시)		접수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근무경력	(   년   개월)		
	(   년   개월)		
	(   년   개월)		
자격증 등		교육이수	
<p>위 본인은 2025년도 완산구청 공원 수목관리원 모집에 응시코자 원서를 제출합니다.</p> <p>이 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소정의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 할 때에는 선발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5년 4월 일</p>			
<b>완산구청장 귀하</b>			

【붙임 제2호】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필수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성별, 사진, 주민등록번호	응시자 본인확인 및 최종 채용시에 4대보험 등의 가입 시 사용	인사자료로 3년 보존
전화번호	서류전형 및 면접합격통지 등에 활용	
주소	서류전형 시 관내, 관외 구분용	
응시원서, 이력서, 경력, 학력, 자격증, 가족사항 등 증빙서류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진행 전반에 활용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요.( )

### ■ 고유식별번호

필수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응시자 본인확인 및 최종임용시에 4대보험 등의 가입 시 사용	인사자료로 3년 보존

상기와 같이 고유식별번호를 수집 하는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요.( )

### ■ 동의거부권리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에 거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진행에 제한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년 4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완산구청장 귀하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 방법

###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

- ①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이하인지 확인(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이하)
  -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가구인원은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구원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수 기준
- ②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
-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만 15세~만35세 청년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 등록을 마친 자를 구직등록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를 통해 확인
-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 ⑤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 ⑥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 확인, 국적 취득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확인
- ⑦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 ⑧ **위기청소년**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 증명서가 있는 자
  -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 ⑩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 ⑪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 ⑫ **여성가장**
  -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어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본인과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자매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여성

구분	첨부서류	
배우자 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관계등록부</li> <li>●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li> </ul>	
배우자 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